

「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03 17(화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04. 14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5. 04. 20(월) 제20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 김진영)

-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,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해 읍·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

- ①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자치센터 명칭의 혼선방지를 위한 명칭의 일원화,
- ② 조례안 제17조제1항의 구성 인원중 고문 인원의 축소,
- ③ 조례안 제17조제2항의 위촉대상자를 당해 읍·면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위촉요건 제한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“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